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상조* · 이재달**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Sangjo Kim · Jaedal Lee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L/C)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ractical use. The judgement criteria of the court in documents' examination is supported b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And, in examination of documents by the Supreme Court, the difference between documents presented and the credit should be followed by the allow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kes a reference for ICC's opinion or decision propos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or otherwise admit by exploring the practices. However, when documents reviewing by the bankers' auditors,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judge in a short time due to the lack of high level of knowledges and insights. As shown the cases of this stud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of an L/C be relaxed, and most of the recent precedents be ruled by the exception of the doctrine. Becaus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o documents reviewers of bank to judge these consistencies, conducting arbitrary document review will be inevitable. As a result, it will be difficult for banks and applicants to ensure the strictness of the documents, and free use of L/C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be avoided. Finally, the expanded usage of the electronic negotiation system that simplifies the highly difficult compliance criteria to ensure the strictness of documents will be needed, and not only be eradicated the acts of arbitrary documents examination practices, but also be promoted the freely usage of L/Cs.

Key Words : Letter of Credit(L/C), Compliance, Discrepancy, Korean Supreme Court

▷ 논문접수: 2013.05.15 ▷ 심사완료: 2013.06.20 ▷ 게재확정: 2013.06.25

* 한국국제대학교 관광대학 교수, sjk5289@daum.net, 055)751-8273, 대표집필

** 한국국제대학교 관광대학 교수, jdalee072@hanmail.net, 055)751-8278, 교신저자

I. 서론

국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며, 또한 격지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에 대한 우려가 국내 거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무역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신용장방식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에 일치성판단은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분쟁의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se for Documentary Credit; UCP), 국제은행표준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se; ISBP) 등에서 서류심사기준으로서 엄격일치의 원칙이 나타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해야 한다고 여러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격일치의 원칙이 서류심사기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서류심사에 많은 불일치율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Ronald Mann교수가 엄격일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연구한 John F. Dolan(2002)의 사례에서 대상 500건의 신용장 중 엄격일치 원칙에 따른 서류심사에 의하면 73%에서 서류와 조건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불일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의 효율성 문제로 수출업계의 대금결제 방식이 신용장 베이스에서 송금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용장 방식의 거래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시간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수출업계의 관심이 위면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홍지상(2011)은 지난 10여년간 신용장거래가 43.2%에서 15.6%로 감소한 반면 전신환(T/T) 등 송금거래비중은 39.4%에서 60.2%로 증가해 수출결제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기업환경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 은행업계위주의 신용장통일규칙과 이의 운용, 특히 엄격일치 원칙에 의한 서류심사의 고난도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 행태가 실무상 존재하는 한, 서류심사 기준의 대세로서 지지되고 있는 엄격일치 원칙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신용장거래에서 실무적으로 서류를 제시해야만 하는 수익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서류를 심사해야만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든 서류일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신용장 거래 시 서류심사의 엄격일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이란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이다. 즉, 신용장 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엄격일치의 원칙(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라고 한다. 박재윤(1986), 안강현(1996), 최준선(2005), 이윤아(2006), 김영락 외(2006)는 위 원칙은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은행의 서류 조사가 신용장과 서류와의 문면상 일치 여부로 제한되어 전적으로 은행을 보호를 위한 것임과 아울러 신용장 개설의뢰인(매수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서류상 합치의 엄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는 서류의 일치여부 판단에 은행의 자의적 해석 등이 허용된다면 개설의뢰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 UCP 상의 서류심사기준

UCP 500 제13조 제a항의 서류심사 기준이라는 항목 하에서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모든 서류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엄격일치 원칙의 은행의 서류조사 의무를 규정하면서 ‘명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것은 본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진(2007)은 신용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심사해야 하는 은행은 통일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ISBP)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조건은 엄격일치 원칙에 비하여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ISBP)에 따라 실질적인 일

치의 원칙을 내포하여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은행들이 사소한 또는 기술상의 하자나 아니냐 하는 데에 은행들 간의 견해가 달라 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습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30일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를 200개 조항으로 발표되었다가, UCP 600의 개정이 되면서 185개항으로 구성된 ISBP Publication No. 681을 승인하여, UCP 600의 추록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함께 적용하고 있다.

3. 대법원에서의 일치성판단기준

대법원판례도 ‘은행이 형식상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라야 한다³⁾’라고 하여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ISBP)을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원칙의 완화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근거

1) UCP

UCP는 그 동안 5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구석이 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자주 발행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안전한 대금 결제수단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한 신용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분쟁이 많은 UCP 문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리를 하고, UCP 500 이후에 발표된 의견들에 관하여 검토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탄생시켰다. 즉 UCP 600은 운송업, 보험업, 은행업, 전자상거래 분야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 63691.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수용하고, 애매한 표현의 제거를 통한 불일치를 줄이고자 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UCP 600개정작업은 2006년 9월에 최종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 해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91대 0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라 함은 UCP 500의 적용에 관한 실무상의 보완서로서, 2002년 10월 국제상업회의소(ICC)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화환신용장의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말한다. UCP 500 제13조 제a항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조문화하는데 기본취지를 두고 있다. 일부국가의 법률에서는 이와 다른 관습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ISBP가 해당국가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에 삽입하지 아니하더라도 UCP와 함께 신용장거래의 일상 업무에 널리 사용될 것이다.

한국무역상무학회(2003)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해설서에 따르면 ISBP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은 UCP 500 제13조 제a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UCP에 반영된 은행관습을 지칭한다. 문제는 UCP에 반영되지 아니한 은행관습을 배제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UCP 500의 SBPED(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 ;신용장서류심사 표준관행)를 주도한 Kozolchyk 교수 등의 다수의견은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은행관습의 조문화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역할을 맡아 온 국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이고 여기로부터 공표된 관련 자료는 결과적으로 모두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주에 포함된다.

1993년 개정된 UCP 500은 세계적으로 신용장분쟁을 줄이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나, 이후에도 2000년까지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는 600개 이상의 교육질의가 쇄도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은행이 관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서류가 신용장조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완전한지의 여부도 심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 2002년 10월30일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200개 조항으로 조정되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국제상업회의소(ICC) 공식문서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2003년 1월1일부터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이 적용됨에 따라 200개 항목의 국제은행표준관행(ISBP)도 새로운 UCP 600 관행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4월 2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는 싱가포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전의 200개항을 185개항으로 구성된 ISBP Publication No. 681을 승인하여, 이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2007은 UCP 600의 추록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함께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진(2007)은 ICC Banking Commission은 공식의견들에서 위와 같은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ICC Opinion TA562(approved May 2004)와 ICC Opinion TA576(approved Oct. 2004)에서 설명된 바에 의하면, 신용장 서류상의 하자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위반되어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조건과 UCP에 위반되었기 때문이며, 그 근거를 설명하고, UCP을 적용하는데 위 국제은행표준관행(ISBP)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채동현(2004)은 실제 은행일선의 실무에서 위 국제은행표준관행(ISBP)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 은행에 대한 강력한 설득 수단으로 작용하고, 분쟁을 법정으로까지 오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의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이었던 미국의 Donald Smith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홍콩과 중국은행들의 경우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 제정이후 신용장 서류하자 주장이 50%나 감소하였다고 하고,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들의 관계까지 개선하게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한다.

3) 국제상업회의소(ICC) Policy Statement, 국제상업회의소(ICC) Opinion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UCP의 해석상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발표하는 Policy statement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채동현(2004)은 이러한 국제상업회의소(ICC) Opinion들은 그 자체가 중재판정처럼 반드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상업회의소(ICC) Opinion의 UCP에 대한 견해는 UCP를 적용하는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결국 쟁점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해당국가의 법원이 담당할 몫이라고 하였다.

4) 신용장전문가들의 의견

채동현(2004)에 의하면 복사된 검사증명서에 추가 서명이 없어 스탬프(stamp)로 원본 표시만 된 경우⁴⁾, 복사된 검사증명서에 추가서명이 없고 스탬프로 원본 표시만 된 경우, 이를 UCP 상 원본서류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아래 신용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본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시내용을 적시하였다. 그 자세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4)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 다42053 판결.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① Buddy Baker 등 대부분의 신용장 전문가들은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와 같은 Certificate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따라서 사진 복사 후 그 위에 서명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원본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② Gary Coller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즉, 서류의 원본성(the originality of documents)과 서명의 필요성(the need of signature)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과 같이 서류에 '원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UCP상 '원본'서류에는 해당하지만 서류의 성격이 '증명서'인 이상 서명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서명이 없는 이상 서류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5) 국내·외 판례

신용장조건에는 품질증명서 3통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서류에는 원본 1통만 제시된 사안⁵⁾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위원회가 의견이나 결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John F. Dolan(1999)는 아래의 외국사례를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으로 받아드려 일치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의 판례 중 Bank of Cochin Ltd.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⁶⁾판결은 6부의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한 신용장의 조건에 반하여 5부의 상업송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은행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고, 허용될 만한 것이라는 이유로 엄격일치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6) 은행실무

외환은행(2003)의 신용장 사례연구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위원회가 의견이나 결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행을 탐구(판례, 은행실무, 신용장전문가의 의견 등)하여 그 거래관행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은행실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은행실무상으로는 오·탈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 공식 의견의 기본입장은 수익자 또는 개설신청인의 이름과 같이 오·탈자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56178.

6) Bank of Cochin Ltd.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 612 F. Supp. 1533(SDNY 1985), affd, 808 F2d 209(2d Cir. 1986).

5. UCP 판례에 의한 일치성의 요건

UCP 500의 제13조 제a항과 UCP 600의 제18조 제c항이 엄격일치 원칙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한 판례들에 나타나 있는 일치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당한 주의 의무(reasonable care)

강원진(2002)에 의하면 UCP에서는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따라서 은행은 서류가 외관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용장 조건과 제시서류간의 문면상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서류상호간 모순이 없고 그 일치성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래되는 것은 은행의 주의 깊은 심사에 의해 그 자체로서는 신용장에 일치되는 서류가 외관상 적절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 때에는 서류의 신용장 적합성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완전성 요건(Integrity)

이천수(2000)는 수출상인 신용장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완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시되어야 할 각 서류의 통수는 신용장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지만, 신용장상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자체에 별도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 1통과 나머지 통수는 사본으로 제시할 수 있다⁸⁾.

3) 문면상의 정규성 요건(regularity)

이천수(2000)는 신용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문면상으로 정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는 각각 그 동종의 서류가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시된 서류는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사실 은행의 서류일치성 여부의 판단은 신용장상에 기재된 조건과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면상의 형식적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류의 형식적 심사라고 하여도 서류가 형식상의 정규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서류가 문면상

7) UCP 500, Article 13-a.

8) UCP, 500, Article 20-c-ii.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지(문면상의 정규성)에 대한 심사만을 의미한다.

4) 서류 상호간의 모순성(inconsistence)

강원진(2002)은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상호간 모순된 서류는 불일치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UCP는 특히 ‘상업송장 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 상의 그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서류에 있어서 물품은 신용장 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류상호간 모순되게 기재된 서류는 불일치로 간주하여 거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연계성 요건(linkage)

강원진(2002)은 연계성이란 은행의 판단과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서류가 내용상으로 상호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면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동일한 물품을 나타내는 것임을 명확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장상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도 신용장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업송장이나 기타 다른 모든 서류와 적절히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6) 상대성 요건(an appearance)

노동환(1998)은 서류가 통상적으로 동종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그 주된 판단기준이라고 하였다. 즉, 서류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서명이 있으며, 나아가 통상 동종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류가 통상적으로 동종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그 주된 판단의 기준이다.

7)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용인되는 요건(acceptability of ISBP)

여기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국제적이므로 당연히 일국만의 은행실무관행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대국만의 관행도 제외 되는 국제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 실무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은행원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법리론과 어떤 적절한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은행실무자가 신용장관련 업무진행과정에서 실제로 근거로 삼는 은행관행에 일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1985년도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 696, 697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56178 판결 등에서도 ‘구체적

판단의 경우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적용사례 분석

1. UCP 500 이전의 엄격일치 완화 사례

1984년경 신용장 당사자들에게 가혹하고 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서류심사의 기본원칙인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악명 높은 미국의 *Beyene v. Irving Trust Co.*(신용장은 대표자의 명칭을 'Mohammed Sofan'이라 요구하고, 제시된 선하증권에서는 대표자의 명칭을 'Mohammed Soran'이라고 기재된 경우) 사건⁹⁾ 이 후에도 연달아 엄격일치한 판결이 이어졌다. 이에 미국의 일부 법원들은 엄격일치의 원칙을 일부 수정내지 완화하여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실질적으로 즉 상당히(substantial) 일치하면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부 사건에서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UCP 500 제13조 제a항이 1994년 5차 개정이 되기 전인 1985년부터 국제적 서류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여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의 엄격일치의 완화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규격표시가 첨가된 경우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 중 상품명칭을 SKETCH PAPER라고 기재하고 규격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SKETCH PAPER 아래에 55x45라는 규격표시를 첨가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업송장에 첨가된 위와 같은 정도의 규격표시는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성질의 표시가 아니라 단가 등의 기재에 의하여 문면상 물품이 동일성이 뒷받침되므로 상품명세에 관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거나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기재라고 볼 수 없다¹⁰⁾고 판시하였다.

9) 596 F. Supp. 438(S. D. N. Y. 1984).

2) 상업송장의 명세에 자구가 첨가된 경우

또한 신용장 상품명세 중 원산지 표시로 JAPANESE ORIGIN, 상업송장에는 명세한 하단에 기재된 증명문구 중 Details are Japanese Origin이라고 표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Details are' 라는 자구가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문구를 보면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후단의 Details란 전단의 package 즉, 포장에 대응하는 내용물이라는 뜻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의 차이를 가지고 상품명세에 관한 문언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¹⁾

2. 1994년에 개정된 UCP 500이후의 엄격일치 예외 사례

이러한 엄격일치 원칙의 완화에 대하여는, John F. Dolan(1996)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과 전달시간이 단축되어 유효기간 내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과거에 비하여 엄격일치의 원칙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쉬워졌으므로 엄격일치의 완화, 엄격일치의 예외 등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였다.

1) 대법원이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이나 결정을 참고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판시한 사례¹²⁾

신용장조건에서는 스탬프가 찍힌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제출한 검사증명서는 원본표시도 없고, 스탬프가 없는 경우: 신용장조건에서는 회사의 스탬프가 찍힌 검사증명서 1부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검사증명서에는 원본표시도 없고 또한 스탬프가 없는 것이 신용장조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¹³⁾에서, 대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일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제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 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제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

1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 696 판결[집33(2)민022, 공1985 89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집33(2)민031, 공1985 896].

1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집33(2)민031, 공1985 893].

12) 서울고등법원 2001. 1. 30. 선고 99다 68425 판결.

1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 63691 판결.

칙의 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 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제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였다.¹⁴⁾

채동헌(2004)은 대법원이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참고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 의견이나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원본서류 개념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의 Policy Statement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12일자 UCP 제20조 제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¹⁵⁾에서 UCP 제20조 제b항의 '원본 표시'라는 조건은 해당서류에 그 작성자가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취급되도록 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하거나 텍스트에 그에 관한 기술이 있으면 충족된다. 둘째, 은행실무도 모두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본의 경우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국제적 표준거래관행을 탐구(외국의 판례, 신용장전문가들의 견해, 은행실무 등)하여 국제표준거래관행으로 인정한 사례¹⁶⁾

신용장조건은 품질증명서 3통을 요구했으나, 제출한 서류에는 원본 1통만 있는 경우, 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품질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QUANTITY / WEIGHT) 3통(3 COPIES) 이 제시되어야 하나 원고가 송부한 서류에는 1통만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¹⁷⁾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제조자 발행의 품질검사증명서 3통(COPIES)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제 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제c항 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복본의 서류를 COPIES 라고 표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통의 원본 이외에는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무방하고, 그 사본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품질검사증명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는 은행이 제출된 원본을 복사하여 2통의 사본을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경우로 보여져, 이를 가지고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품

14) 공2002. 8. 15.(160), 1784.

15) ICC, Comm'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July 12, 1999. Document n° 470/871 Rev. 29 July 1999.

16) 대법원 2004. 6. 15. 선고 2003. 63882 판결.

1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56178 판결.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질검사증명서 3통 중 사본2통이 흠결되었다. 하여도 이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가지고 신용장조건과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⁸⁾

채동헌(2004)에 의하면 국제표준은행거래관행이라고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가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 신용장전문가의 의견, 외국판례, 은행실무 등을 탐구하여 국제표준관행으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미국에서의 판례 중 Bank of Cochin Ltd.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¹⁹⁾판결은 6부의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한 신용장의 조건에 반하여 5부의 상업송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은행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고, 허용될 만한 것이라는 이유로 엄격일치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외국의 신용장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영국의 Gray Collyer의 의견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서류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였는데, 이는 일단 문제로 된 서류가 선하증권 등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서류가 아님을 전제로 그 문서 자체가 신용장거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복사기에 의한 사본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없는 한 얼마든지 개설은행이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용장대금을 거절할 수 있을 만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3) ISBP 645를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수용하여 판시한 사례²⁰⁾

채동헌(2004)은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국제은행표준관행(ISBP)가 전 세계에 하나의 규범적 요소를 구성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대법원이 국제적 서류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용장조건의 상품명세와 선하증권 상의 상품명세에 오기가 있는 경우, 신용장 및 다른 선적서류에는 상품명세가 DK02DBI-021로 표시되어 있는데, 선하증권에만 DK02DBI-02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사유가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선적서류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²¹⁾에서, 대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의 승인 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 645 제28항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와 관련하여 선적서류상의 철자오류 또는 타자 실수 등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적서류에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의 철자 오류 또는 타자 실수에 의하여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재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오류

18) 공 2003.5.1.(177), 977.

19) Bank of Cochin Ltd.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 612 F. Supp. 1533(SDNY 1985), affd, 808 F2d 209(2d Cir. 1986).

2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 58283 판결, 2003. 11. 28. 선고 2001다 49302 판결.

2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 7770 판결.

는 해당 문서를 하자서류로 만들지 않지만,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의 오류는 타자상의 오류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동 문서는 하자서류로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²⁾

외환은행(2003)의 실무사례의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를 국제표준관행으로 탐구하여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 제28조 오자 또는 입력착오는 해당된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불일치로 보지 않는다. 둘째, 은행실무상으로는 오, 탈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 공식의견의 기본입장은 수익자 또는 개설신청인의 이름과 같이 오·탈자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4) UCP 600의 14조 제d항('모든 서류에서 자료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된다')에 근거한 서류심사 관련 최근의 사례²³⁾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의 불일치의 경우의 사례에서,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SIZE 0-100MM 100PCT'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요구 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SIZE Analysis 0-50MM 75.21%'라고 기재된 사안²⁴⁾에서, 대법원은 '위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는 75.21%가 0-50m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 24.79%에 해당하는 물품의 크기(SIZE)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신용장조건과 상업송장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르기 위해, UCP 600규정을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UCP 600 제14조 제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충돌되어서는 안된다'²⁵⁾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22) 공2003. 12. 15. (192), 2332.

23) 대법원2011. 1. 13. 선고 2008다 8833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 52911 판결.

2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56221 판결.

25) UCP 600, Article 15-d.

IV. 판례분석에서 나타나 있는 시사점

위 판례들에 나타나 있는 서류심사의 기준인 엄격일치 원칙은 법적인 원칙으로서,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행해진 서류심사 결과물들이다.

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에 나타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대법원도 국제적 서류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여 1993년 UCP 500 제 13조 제a항이 개정이 되기 전인 1985년부터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의 엄격일치의 완화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2) 채동현(2009)은 1993년에 개정된 UCP 500이후에는 대법원은 제13조 제a항을 엄격일치 원칙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엄격일치 원칙의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라야 한다.”²⁶⁾라고 하여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ISBP)을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이번 제6차 개정의 UCP 600(제14조 제d항)에서도 모든 서류에서 자료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모든 서류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순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일치성의 강도를 더욱 더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법원에서는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행에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찾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가 공식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공식 출판물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5) 그리고 UCP,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은 국·내외 판례, 국제적 신용장전문가의견, 은행실무 등을 탐구하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인정하고 받아드릴 것이다.

2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 63691.

6) 그러나 대법원은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을 참고로 할 것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거의 엄격일치 예외로 판시할 것이며, 그 완화된 강도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V. 결론 및 한계점

엄격일치 원칙은 법원의 관례로서 정립된 서류심사 원칙으로서,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실무자들이 어떻게 이를 적용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UCP, 국제은행표준은행(ISBP)에서는 엄격일치라는 문언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UCP 500 제14조 제a항을 엄격일치 원칙의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명확한 서류의 일치성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류심사는 항상 서류가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서류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례에 나타나 있는 엄격일치 원칙의 판단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르기 위해, 대법원이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이나 결정을 참고로 판단하기도 한다.

셋째,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르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가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표준은행거래관행을 탐구(외국의 관례, 신용장전문가들의 견해, 은행실무 등)하여 국제표준은행거래관행으로 인정하여 판시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수익자 또는 개설신청인의 이름과 같이 오·탈자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번 제6차 개정의 UCP 600(제14조 제d항)에서도 ‘모든 서류에서 자료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일치성의 강도를 더욱 더 완화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위 사례분석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이와 같은 일치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7.
-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 『무역상무연구』, 제13권 제3호, 2000, 502.
- 김선국, “신용장의 엄격일치성과 그 완화수단”, 『경영법률』, 제5집, 1992, 456.
- 김영락 · 박세운 · 방두완,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2006, 7.
- 김재열,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77-84.
- 노동환, “신용장거래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 기준의 한계와 보완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4권 제1호, 1999, 184-185.
- 노동환,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국제표준은행관행 적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71.
- 박재윤, “신용장과 서류와의 합치여부(대상판례: 대법 1985.5.28. 선고 84다카696, 84다카697 판결)”. 『민사판례연구』, 제8권, 1986, 2733.
- 박준서, “신용장매입의 법률관계”, 『사법논집』, 제11집, 법원행정처, 1980, 26.
-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22권, 2003, 60.
- 송계의, “Incoterms, 2010의 목함운송물류조건의 이용실태 분석과 활성화”,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3. 123-124.
- 외환은행, 『신용장사례연구 ICC 공식의견서 모음』, 2002, 42-67.
- 외환은행, 『신용장사례연구 II』, 2003.
- 외환은행,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se(ISBP) 해설』, 2003, 11.
- 유중원, “미국통일상법전 UCC 개정 Article 5에 관한 고찰” 『법조』, 제47권 제4호, 1998, 76.
- 유중원, 『신용장의 법리』, 육법사, 1993.
- 유중원, “제6차 개정 UCP 600의 주요 특징과 그 문제점”, 『금융법학』, 2007.
- 윤승진, “상업신용장의 법률관계”, 『사법논집』, 제14집, 1983, 86.
- 이용근 · 최유섭, “UCP600상의 서류심사관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2006, 13.
- 이윤아,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에 관한 연구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6.
- 이천수, “화환신용거래에서의 전통적인 서류심사기준하의 서류일치성요건”,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0, 68.
- 일본경제법령연구회,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설과 Q & A』, 1993. 64.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진순환, 『신용장통일규칙(Documentary Credits)』, 한울출판사, 2007.
- 정용혁 · 지정준,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Pub. NO. 681 번역 및 해설서』, 신생커뮤니케이션, 2007.
-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최종본의 주요개정내용과 제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학회』, 2007, 11.
- 조영철, “수출결제방식 변화와 무역기업의 대응방안”, 『복지행정연구』, 제26권, 2010, 35-67.
- 채동헌, 『국제거래와 법 -신용장편-』, 청림출판사, 2004.
- 채동헌,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국제표준은행관행(ISBP)과 판례의 동향: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Business finance law』, 제3권, 2005, 57-83.
- 채동헌, “최근 판례에 나타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법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09, 134-136.
-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5.
- 한국무역상무학회, 『국제표준은행관습(ISBP)해설서』, 사단법인 한국상무학회, 2003, 3-7.
- 홍성기,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서 엄격일치의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97.
- 홍지상, “수출결제방식 변화와 대응방안”, 『Trade Focus』, kita.net, 2011.1.
- 小峯 登, 『1974년 信用狀統一規則(上卷)』, 外國爲債 貿易研究會, 1974.
- 新堀 聰, 『貿易去來』, 日本經濟新聞社, 1998.
- 新堀 聰, 『貿易去來의 理論과 實戰』, 三嶺書房, 1993.
- A. G. Guest, General Editor, “Chitty on contract, General Principles”, paragraphs 826 and 833 (26th ed. 1989); 1 March 2000 *ICC Document 470/TA/364* and March 2000 *ICC Document 470/TA. 443*.
- Bank of Cochin Ltd.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 612 F. Supp. 1533(SDNY 1985), *affd*, 808 F2d 209(2d Cir. 1986)
- Burton V. McCullough, *Letter of Credit*, Matthew bender, Release No. 28, October, 2002.
-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3 1991, 291.
- Harvard University, “Fraud in the Transaction: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Harvard Law Review*, Vol. 93, No. 5, March 1980, 1001.
-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180.
-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1997,” *ICC, Publishing S.A.* Paris, 35.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se for Documentary Credit(UCP)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John F. Dolan, *Letter of Credit Dispute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s" 105*, Banking L Jour., 380. 1988, 385-386.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Commercial and Standby Credit. Revised Edition)*, A. S. Pratt & Sons, 1999, 6-38.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rev. ed., Warren, Gorham & Lamont, 1996.

John F. Dolan, *Why Are So Many Documents Discrepant?*, 2002.

M. A. Daves, *The Documentary Credits Handbook*, Woodhead-Faulkner, New York, 1989.

Robert M. Rosenblith, "Letter of Credit Practice: Revisiting on going Problems" ,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4(1991) p. 121

Roger Kreitman, "UCP 600: The end in sight?", *Letter of Credit Law Developments, Prepared for CBA Commercial & Financial Transactions Committee*, Jenner & Block LLP, 2006.

국문 요약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상조 · 이재달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 신용장, 일치성, 불일치, 대한민국 대법원